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관광진흥기금
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월 8 일

여 수 시 장 2025/12/8



여수시 조례 제2261호

붙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261호

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30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<u>까지</u>로 한다.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<u>2030년 12월 31일</u> <u>까지</u>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